1. 개정이유

의료적성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적성검사기관인 병·의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,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의 근거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의료적성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관리 방안 마련(안 제7조제4항)

나.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 근거규정을 수정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한국교통안전공단 합의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(별지)

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.)은 제1항의 의료적성검사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"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.)"을 "공단"으로 한다.

제16조 중 "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의료적성검사기관) ① ~	제7조(의료적성검사기관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
	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
	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(이
	하 "공단"이라 한다.)은 제1항의
	의료적성검사기관과 별도의 업
	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제8조(종합판정표) ① 의료적성검	제8조(종합판정표) ①
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신청	
한 자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	
의료적성검사서와 제7조제3항	
에 따른 첨부서류(이하, "의료	
적성검사서등"이라 한다)를 지	
체없이 발급하여야 하고 수검자	
는 발급받은 의료적성검사서등	
을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	<u>공단</u>
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	
(이하 "공단"이라 한다.)에 제출	
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0조제2항	
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	
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	
지 아니하다.	<u>.</u>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	제16조(재검토기한)
관은 <u>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</u>	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
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	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

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 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 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리에 관한	<u> 규정」</u>	